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에 의거 2023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신규)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2023년 3월 6일(월) ~ 3월 31일(금) 까지 이수
 - 수료증 제출 : 3월 31일(금) 17시 기한, 온라인(e-mail) 제출
 - 온라인 제출 : safety@kau.ac.kr
 - 제출 파일명 : 이름(학부(과), 학년, 학번) → 예시) 홍길동(항우기 2학년 2022121001).pdf
3.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대상 학부(과)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전원
→ 대상 학부(과) : 전 학부(과), (단, 항공경영융합학부, 경영학부, 영어학과 제외)
 - 교육시간 : 반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법률내용

-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안전교육 실시자 조건
 - 안전점검 직접 실시자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연구실 책임자
-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근로자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비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과태료 :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유의사항 :
 - 가. 안전교육 이수 :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3시간 또는 6시간 이상 이수
 - 나. 필수 안전교육 이수과목 : 과목 선택 자유
 - 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통제 강화
 - 라.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5. 수강절차 :
 - 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검색 후 접속
 - 나.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입력사항) 기존 회원가입자 : "나"항 (3)직급, 학년, 학기 수정 후 "다"항으로 이동
 - (1) 기관분류 : 대학
 - (2) 소속기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검색 후 클릭
 - (3) 직급(학년) : 대학원생(학기 입력) 또는 연구원, 학부생(학년 입력)
 - (4) 회원권한 : 연구활동종사자(다른 권한 안됨)
 - (5) 부서(학과) : 해당 학부(과)명 입력 (전공으로 표기하면 안됨)
 - 예시 :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신소재공학과, 공학융합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드론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자유전공학부, 공학계열
 - (6) 사번(학번) : 해당 학번 입력(예시 : 2022121001)
 - 다.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시간에 맞는 해당분야 수강(과정소개에 기재되어 있음) →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 스캔 후 파일이름 수정 → 이메일(safety@kau.ac.kr) 제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책임자 용)

연구실 안전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에 의거 2023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신규)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2023년 3월 6일(월) ~ 3월 31일(금) 까지 이수
 - 수료증 제출 : 3월 31일(금) 17시 기한, 온라인(e-mail) 제출
 - 온라인 제출 : safety@kau.ac.kr
 - 제출 파일명 : 이름(학부(과), 사번) → 예시) 홍길동(항우기 2023001).pdf
3.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대상 학부(과)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전원
→ 대상 학부(과) : 전 학부(과), (단, 항공경영융합학부, 경영학부, 영어학과 제외)
→ 실험실을 배정 받으신분(연구실책임자) 및 실험실에서 강의 및 실험교과목 강의하시는 분 해당
 - 교육시간 : 반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실험실
반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실험실

법률내용

-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안전교육 실시자 조건
 - 안전점검 직접 실시자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연구실 책임자
-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근로자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비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과태료 :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유의사항 :
 - 가. 안전교육 이수 :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또는 6시간 이상 이수
(대학정보공시 및 과기부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입력 사항)
 - 나. 안전교육 이수과목 : 과목 선택 자유
 - 다.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 참여 점수 부여)반영 : 교무팀 협의

5. 수강절차 :
 - 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검색 후 접속
 - 나.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입력사항) 기존 회원가입자 : "다"항으로 이동
 - (1) 기관분류 : 대학
 - (2) 소속기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검색 후 클릭
 - (3) 직위/직급 : 연구실책임자
 - (4) 권한 : 연구실책임자(다른 권한 안됨)
 - (5) 부서(학과) : 소속 학부(과)명 입력
 - 예시 :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신소재공학과, 공학융합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드론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자유전공학부, 공학계열
 - (6) 사번(학번) : 사번 입력
 - 다.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시간에 맞는 해당분야 수강(과정소개에 기재되어 있음) →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 스캔 후 파일이름 수정 → 이메일(safety@kau.ac.kr) 제출